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40

2012. 10. 8.
재정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8월 2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2.10.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진흥실장 권혁소)

가. 제안이유

○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를 둠(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 도시농업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13조).

○ 시장은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 시장은 도시농업에 적합한 공유지를 공영도시농업농장으로 개설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임대할 수 있고, 구청장의 공영도시농업

농장의 개설 승인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협력 및 도시농업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9조).

○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단체 및 자치구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조례안의 개요

○ 제정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공간의 제공, 여가활동의 증진, 정서 함양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

○ 급격한 도시화의 과정에서 악화된 도시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최근 도시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농사활동을 하는 도시농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 도시농업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과 도시 유휴지 활용을 통한 공간 이용 효율화라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녹지 조성을 통한 온실가

스 감축,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민 정서 순화 등의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하듯 정부는 2020년까지 도시텃밭 8,000개소(3,000ha)를 조성하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인구를 전체 인구의 10%인 50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1)] ,

○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농업 사업들이 최근 급속히 확산되어,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도시농업의 하나인 도시텃밭의 면적은 2010년 104ha에서 2011년 489ha로 385ha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따라서, 초기단계인 우리 도시농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서울시(이하 “시”) 도시농업의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법 제6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안 제4조는 시장에게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을 비롯한

1) 농림수산식품부(2011.6), 「그린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하고, 제3항에서는 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법령의 위임없이 구청장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법 제23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계획이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청장에 대한 의무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라.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부터 제11조)

○ 안 제5조부터 제11조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도시농업연구·기술개발·홍보, 중장기 비전 설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경과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위원회는 시의 산업경제정책관과 시의원을 포함한 도시농업 전문가들 가운데 시장이 위촉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시 소속 공무원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지 않고 위원회의 위원장도 위원의 호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로서 위원회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위원회가 도시농업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의 정책과 분리될 수 없고, 또 생활경제과장을 간사로 두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시 소속 공무원의 당연직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보임.

○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사항과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정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1조의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마.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안 제17조, 제18조)

○ 안 제17조는 시장이 공유지 가운데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해 공영도시농업농장(이하 “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고, 도시농업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8조에서는 구청장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령에 정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공유지를 농업농장으로 개설해 활용하는 것은 접근성 강화를 통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제고는 물론

이고, 도시농업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농업농장의 임대 과정 등에서 특혜 시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며, 안 제17조제2항은 시장이 농업농장의 변경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시민의 책무로 오해될 수 있어 수정이 요구됨.

사. 종합의견

○ 도시농업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과 도시 유휴지 활용을 통한 공간 이용 효율화라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녹지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민 정서 순화 등의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본 제정안은 도시농업에 대한 최근의 관심의 증가에 따라 제정된 법에서 시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조항이 이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시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도시농업에 대한 시 정책의 차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이 밖에도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사무는 법령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시장·구청장 모두에게 권한이 있어

자칫 중복 설치 등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 기관간 협의를 통해 중복을 회피할 방안 마련이 요구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생략」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40

제안년월일 : 2012년 10월 8일
제 안 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민·관 거버넌스로서의 취지에 걸맞게 서울특별시도시농업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가.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수를 15명으로 하며, 위원일부를 조정함(안 제6조).

나. 수당지급 규정을 관련 조례에 근거하도록 수정함(안 제11조).

다. 법령상 시장의 책무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진흥실장과 위촉직 위원중에 선출된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3조제2항제1호중 “오손”을 “오염”으로 한다.

안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의견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산업경제정책관 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생활경제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진흥실장과 위촉직 위원중에 선출된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삭제>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원안과 같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사수당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제13조(도시농업인의 의무) ① <생략> ②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오손하는 행위 2. ~ 4. <생략> ③ ~ ④ <생략>	제13조(도시농업인의 의무) ① <원안과 같음> ②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오염하는 행위 2. ~ 4. <원안과 같음> ③ ~ ④ <원안과 같음>
제17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임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폐쇄,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제17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임대) ① <원안과 같음> ② <삭제> ② <안 제3항과 같음> ③ <안 제4항과 같음> ④ <안 제5항과 같음> ⑤ <안 제6항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

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해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시민과 상호 협력하여 도시농업인·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도시농업관련 산업 육성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활동 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 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진흥실장과 위촉직 위원중에 선출된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도시농업인의 의무) ①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오염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시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미치는 행위

③ 시장은 도시농업인이 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제16조(청문)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이때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17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임대)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설된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법 제16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6조의 범위에서 시장이 공고를 통해 정할 수 있다.

④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에 관한 임대 신청, 임대 요건 및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요건: 서울특별시에 주소가 있을 것

2. 임대요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재임대 가능

4. 그 밖에 임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⑤ 시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 임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알리기 위해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30일 전에 세부 임대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치구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 ① 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구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 물탱크, 실습교육장, 퇴비장 및 농기구 보관창고 등 농장 내 부속시설 확보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③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운영관리계획서에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21조(우수사례 시상 등)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